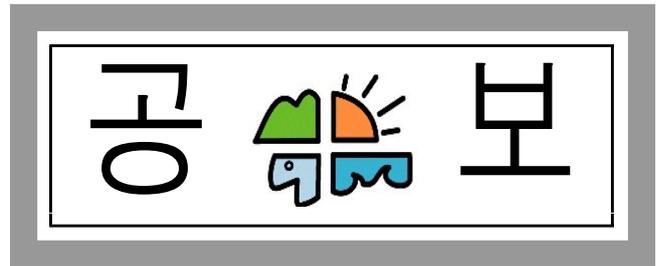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65호 2020년 5월 29일(금)

조 례

-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4
-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규 칙

-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14

고 시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19
-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0

입법예고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2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7
-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4
-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5
-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64
-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입법예고 71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51호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52호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가족을 말한다.

1. 외국인주민 :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
2. 다문화가족 :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가족

제3조(적용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

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시 소재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정보제공 및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처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 소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서 처우(處遇)를 받는다. 해당 비용 등의 감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
2. 각종 행정서비스의 수혜(受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사무 또는 추진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

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2조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위탁·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표창)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다문화가족에게 지원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과 구성·운영 중인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협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 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53호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

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조합인 경우 명칭)	사업자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지원신청 금액	
------------	--

계좌번호	
------	--

청구내역	운행일	차량번호	운행구간		운행요금		비고
			기점	종점	보조금	자부담	
※ 입력자료 초과 시 내역서 별첨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운행 증빙자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67호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지급하는데”를 “지급하는 데”로, “보호하는데”를 “보호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5조 중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자에 한하여”를 “신고자에게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이”를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수) 착오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근거법령	위 반 행 위	지 급 액
1	법 제16조제1항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의무 위반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자: 5만원
2	법 제22조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3	법 제28조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 4), 5) 또는 나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5	법 제29조제1항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20만원
6	법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8	법 제30조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9	법 제30조제3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10	법 제30조제4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5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30조제6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13	법 제30조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4	법 제30조제8호	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5	법 제30조제9호	주요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6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속 초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속초해수욕장 행정사무실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186-1 (조양동)	속초시청 (관광과)	속초해변 행정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철거예정	-	

속초시고시 제2020-7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한 “속초시고시 제2020-73호(2020.5.22.)호의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6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29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579	증)120.3	39,699.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9,579	증)120.3	39,699.3	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조양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86번지 일원	39,579	증)120.3	39,699.3	-	

* 정정 전 : 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조양동 663-1번지 ⇒ 정정 후 : 조양6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조양동 1586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정정)

구 분	도 면 표 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86번지 일원	◦ 면적확장 - 39,579 → 39,699.3m ² (증 120.3m ²)	◦ 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43	주간선 도로	12,270	속초시경계 대포 898도	속초시경계 노학 산297-1 임	일반 도로	대포항 청대교	1974.8.14. (건고 제272호)	
기정	중로	1	8	20 ~22.5	보조 간선	658 (88)	대로1-3 조양 1292-14 도	대로1-6 조양 558-24 천	일반 도로		1987.2.17. (강고 제87-12호)	
기정	중로	2	5	15 ~18.5	보조 간선	495 (145)	대로1-2 조양 649-4도	대로1-1 조양 산 302-13임	일반 도로		1987.2.17. (강고 제87-12호)	
기정	중로	3	62	12 ~15	집산 도로	257 (106)	중로1-8 조양 1540-4 도	중로3-3 조양 1502-1 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호)	

※ ()는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정정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	대로1-1	◦ 도로부지내 사유지 기부채납 - 폭원 : 35~43m(변경없음) - 연장 : 12,270m(변경없음)	◦ 도로부지내 사유지 보행공간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중로1-8	중로1-8	◦ 폭원확장 - 폭원 : 20~22.5m(변경없음) - 연장 : 658m(변경없음)	◦ 공동주택 주출입구 연결노선 폭원확장
중로2-5	중로2-5	◦ 폭원확장 - 폭원 : 15~18.5m(변경없음) - 연장 : 495m(변경없음)	◦ 공동주택 부출입구 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확장
중로3-62	중로3-62	◦ 폭원확장 - 폭원 : 12~15m(변경없음) - 연장 : 257m(변경없음)	◦ 공동주택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폭원확장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

▣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A	1	속초시 조양동 1586번지 일원	38,009	증)30.3	38,039.3	

* 정정 전 : 38,093.3m²(증 84.3m²) / 조양동 663-1번지 ⇒ 정정 후 : 38,039.3m²(증 30.3m²) / 조양동 1586번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	A-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배 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있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색 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건 축 선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정정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내 조경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명칭 등 조문정비를 통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별도 표기(안 제3조)
- 나. 무연고 유골 사용료 신설(안 제11조, 제19조)
- 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시신 등 봉안기간 단축(안 제18조)
-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거주기간 폐지(안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경로시설팀)
- 연락처 : 전화(033-639-2673), 팩스(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033-639-267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15조제1항 중 “승화원”을 “속초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과 법 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10년”을 “안치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봉안묘”를 “속초시 공설봉안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거주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와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공설화장시설	속초시 승화원	강원도 속초시 이목로 194
공설봉안당	속초시 제1추모의 집	강원도 속초시 이목로 196
	속초시 제2추모의 집	
공설봉안묘	속초시 공설봉안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55-7, 산155-8 일원
산골시설	속초시 유택동산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55-7내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1조, 제19조 관련)

(단위 : 원)

종 류	명 칭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관 리 비	
				관 내	관 외	관 내	관 외
공 설 화장시설	속초시 승화원	대인(15세이상)	1구당	100,000	700,000	0	0
		소인(15세미만)	“	80,000	400,000	0	0
		개장유골	“	70,000	300,000	0	0
		사 산 아	“	50,000	200,000	0	0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관련자	“	면제	면제	0	0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	면제	50%감면	0	0
산골시설	유택 동산		1기당	0	0	0	0
공 설 봉안시설	속초시 추모의 집	개 인 단	“	200,000	600,000	0	0
		부 부 단	“	300,000	900,000	0	0
		제21조 제1항 관련자	“	50%감면	20%감면	0	0
		무연유골 (무연고단)	“	100,000	300,000	0	0
	속초시 공 설 봉안묘	개 인 단	“	460,000	690,000	350,000	525,000
		부 부 단	“	690,000	1,035,000	480,000	720,000
		제21조제1항 관련자	“	50퍼센 트 감면	20퍼센 트 감면		

【별표 3】

국가보호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제12조, 제21조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명칭 및 위치) <u>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 공설화장시설인 속초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 과 공설봉안시설인 속초시추모의집(이하 "추모의집"이라 한다) 및 속초시공설봉안묘(이하 "공설봉안묘"라 한다)로 하고, 승화원과 추모의 집은 속초시 이목로 194(노학동) 및 속초시 이목로 196(노학동)에 두며, 공설봉안묘는 속초시 노학동 산155-7번지 및 산155-8번지에 둔다.</u></p>	<p>제3조(명칭 및 위치) <u>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u>별표 1</u>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사용료) ① ----- <u>별표2</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1. (생략)</p> <p>2. ----- -- (단서신설)</p> <p>3~5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u></p> <p>3~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운영시간) ① <u>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한다.</u></p>	<p>제15조(운영시간) ① <u>속초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 ----- -----.</u></p>

② (생략)

제18조(사용기간) ① (생략)

② 무연고 사망자 시신,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10년-----.

③~④ (생략)

제19조(사용료 등) ① 봉안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고 ----.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추모의 집은 사용료를 공설봉안묘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등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
-- (단서신설)

3~5 (생략)

② -----
-- (단서신설)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과 법 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법 제27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 안치기간-----.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등) ① -----
- -----표 2와 -----
----.

② -----

----- 속초시 공설봉안묘-----
-----.

제21조(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3~5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거주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현행과 같음)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장사시설인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신설(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경로시설팀)
- 연락처 : 전화(033-639-2673), 팩스(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033-639-267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생략) 1. ~ 9. (생략) 10. (신설)	제1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 별지10호서식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속초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연중 유료화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친환경차 이용자 및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방안 마련(안 제3조 3)
- 나.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사항 마련(안 제3조 4)
- 다. 영유아를 동반한 성인 및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항 마련(안 제3조 8)
-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별도 표시 및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90), 팩스(033-633-5006),
전자문서(hye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639-21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요금 및 월정 기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4호(중전의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제2호 중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30분까지 (1구획당)	30분초과시 매10분당 (1구획당)	1일 주차 요 금	비수기(성수기외 기간)			성수기(7.1~8.31)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주차요금	600원	300원	6,000원	1,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월정기간	주간 75,000원		야간 56,000원			주·야간 131,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 가. 주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매 10분단위에서 5분이 경과시 적용한다.
 - 나.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3.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00
4.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③ (생략)

③-----

----- 않을 -----

-----.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사유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단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19. 12. 18.)함에 따라, 재단 출연을 위해 제정·운영한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6), 팩스(033-639-2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교류규제평가팀(☎033-639-2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과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수용

- 1)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 포괄적 규정 삭제하고 구체적 규정
(안 제21조제1항제2호, 제5호)
 - 4)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안 제22조제2항)
 - 5) 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
 - 6)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4조제1항)
- 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기한 개선(안 제16조제1항제4호)
- 다. 상위법령 명칭 변경(안 제12조제3항, 안 제15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하수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90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99 / 속초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팀)
- 연락처 : 033-639-2931 (FAX 033-639-24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로 부터”를 “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를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2월”을 “5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대상자로서,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단하여”를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p> <p>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u>배수구역</u> 또는 <u>하수처리구역</u>을 대상으로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p> <p>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 --- <u>로부터 직선거리</u> -----.</p> <p>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 ----- <u>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u>를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물환경보전법</u>」 제32조제8항 ----- ----- ----- ----- ----- -----.</p> <p>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1. ~ 3. (생략)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감면 등) ① (생략)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

-----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4 .
-
-
-
-
- 5월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별채난지역의 대상자로서, 감면 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 ③ (생략)

제22조(이의신청)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신설>

-----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5. -----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

-.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

-----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② (생략)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times 3/10
0 \times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
의 3

② (현행과 같음)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
- 바. 정책실명제 공개방 설치(안 제7조)
- 사. 기록 및 보존(안 제8조)

- 아. 이력관리(안 제9조)
- 자. 사업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6.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문서통신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34), 팩스(033-639-247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문서통신팀 (☎033-639-2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무의 입안·결정·집행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개방 설치) 시장은 담당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9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국장 ○○○과장 ○○○주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6.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문서통신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34), 팩스(033-639-247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문서통신팀 (☎033-639-213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 사업부서		② 담당자 (전화번호)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		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입법예고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

2. 폐지이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법 부재 등 현실성이 없어 현재 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규로써 향후에도 시행 할 계획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6. 17.까지 속초시장(참조 : 건설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als3123@korea.kr

2)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건설행정팀) / 우) 24826

3) 연락처 및 팩스 : 033-639-2753(fax 033-639-248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33-639-2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